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1나37194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유세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건한, 조지윤

변 론 종 결 2022. 9. 28.

판 결 선 고 2022. 11. 9.

제1 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0가단152651 판결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전남 진도군 D 전 1,564㎡에 관하여 2019. 10.

29.자로 체결된 매매계약을 2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8행부터 제4면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한 채권자이고, C이 피고에게 2019. 10. 13.까지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C과 약정하였는데, C이 위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차용금 채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행위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의 “2019. 7. 7.”을 “2021. 7. 7.”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5면 제4행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설령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물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아닌 가액배상판결이 나는 경우 C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가 C의 유일한 재산에 대한 가액을 독식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액 중 피고의 안분배당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라고 보아서 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이므로, 수익자인 채권자로 하여금 안분액의 반환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에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등).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태안, 판사 윤경아, 판사 박남천